

제정이유 및 주요내용

1. 제정이유

-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사항 변경(해지)

2. 주요내용

- 우편취급국 위탁계약 해지에 따른 업무종료 사항 안내

3. 관계법령

- 우체국창구업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

4. 담당부서 : 우정계획과